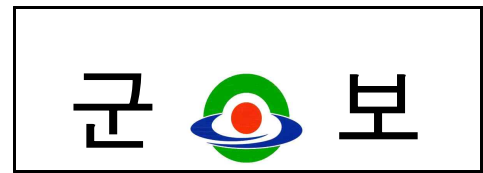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80호 2022. 8. 1.(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502호)
-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예천군 조례 제2503호)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04호)
-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05호)
-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06호)
-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07호)
-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08호)

공 고

- 공인 폐기 및 신조(개각)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2-1029호)
- 「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오류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상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싱기술·특허공법 선정 평가위원(후보자) 공개 모집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2-1025호)
-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2-1030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02호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채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4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등
2. 작업복 등 생필품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차량 임차료
5.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예천군의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운영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 매년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 계획 수립·시행

나. 전담인력 배치(안 제5조)

-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 배치

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안 제6조)

- 작업복, 항공료, 차량, 교육비 등 지원

라. 지도·점검(안 제7조)

-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근로 환경, 고용실태에 관하여 지도·점검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03호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천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을 보좌하여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인수위원회 구성,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당선인 보좌, 위원회 업무 총괄, 직원 지휘·감독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다. 직원, 예산·활동지원,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음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지원
- 참석 위원, 직원, 자문위원에게 수당, 여비 등 지급

라. 위원회 활동 백서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공개

예천군의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04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
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
1조”로 한다.

제2조(「예천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
천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7조 중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
7조”를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3조(「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예천군 기업 및 투
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1을 제14조의2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5조의1 및 제25조의2를 각각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으로 한다.

제25조의2(중전의 제25조의1)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며, 지원규모와 결정방법 등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2.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재생 에너지 시설은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제30조의1을 제30조의2로 한다.

제4조(「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

항제2호”로 한다.

제5조(「예천군 반 설치 조례」의 개정) 예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예천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7조(「예천군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위임하므로써”를 “위임함으로써”로 한다.

제8조(「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방자치법 ·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예천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예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을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제13조(「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의 개정) 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 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도시과”를 “도시과”로 한다.

제15조(「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을 “예산”으로 한다.

제2조 중 “자치법규 등”을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를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예천군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군수”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규칙은”을 “규칙 공포문”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게재로써”를 “게재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예천군의 회”로,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를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발행한”을 “발행된”으로 한다.

제10조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의”를 “공보나 일간신문에”로, “게시판의 게시로써”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제11조 중 “다른법령”을 “다른 법령”으로 한다.

제12조 중 “입법예고결과”을 “입법예고 결과”로, “의견제출자에 대하여도”를 “의견제출자에게도”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7조(「예천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제5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조문이 포함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8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나. 「예천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다.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 라.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마. 「예천군 반 설치 조례」의 개정
- 바. 「예천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사.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 아.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 자.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 차.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카.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 타. 「예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파. 「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의 개정
- 하.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거.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 너.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 더.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 러.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05호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간사 및 직원)”을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무국) ①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에서 규정한 사무국 운영 및 업무 내용을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명시하여 협의체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의2)

-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음
- 사무국은 지역사회보장, 행정실무, 예산회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06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 전단 중 “재해·재난·곤충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산불비상근무 등으로 장기간”을 “재해·재난·대규모 행사·비상근무·선거업무지원 등으로”로, “연 5일”을 “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지원 종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휴식권 보장*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천군 노조 요청 사항 반영

나. 격무 종사, 군정 업무 수행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연 5일에서 5일로 변경하여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마다 5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거업무지원 특별휴가 신설 및 용어 정비(안 제21조제9항)

○ 현행 : 재해·재난·곤충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산불비상근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경우

○ 개정 : 재해·재난·대규모 행사·비상근무·선거업무지원 등으로 격무에 종사하는 경우

나. 격무 종사, 군정 업무 수행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 변경
(안 제21조제9항)

○ 현행 : 연 5일 이내

○ 개정 : 5일 이내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07호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의 제목 “(지원신청 등)”을 “(지원신청 및 결정)”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지원신청서 및 읍·면장의 의견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시설	☐ 가스 ☐ 소방 ☐ 기타()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나. 이에 지원대상 재난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함

◇주요내용

가. 재난예방시설 지원대상 추가 신설(안 제3조제2항)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 그 밖에 예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3항)

- 지원신청서 및 읍·면장 의견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08호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3월 1일”을 “4월 1일”로, “2월”을 “3월”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인터넷 예매 및 환불) ① 곤충생태원 입장권과 모노레일 탑승권 (이하 “예매권”이라 한다)은 인터넷 예매의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형태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예매 취소 및 변경은 방문예정일 전일 24시까지 할 수 있으며, 취소 시 전액 환불된다. 다만, 곤충생태원의 휴관 실시 등에 따른 내부 사정으로 미운영 또는 임시휴관 시 곤충생태원 관리자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취소 가능 시간 이후 예매권은 예약 확정되므로 취소가 불가하며 방문예정일 수입으로 확정한다.

④ 그 밖의 예매 취소 및 변경의 관련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관련 행사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관련 행사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홍보물품 제작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천곤충생태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는 유관기관 및 관람객
 2.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관계자
 3. 각종 이벤트 참가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곤충생태원 관람료

구 분	관람료		
	일 반	아동·청소년	예천군민 50% 할인
보 통 권	5,000원	4,000원	
할 인 권	4,000원	3,000원	

※ 할인권 : 단체, 만 65세 이상인 사람, 군인, 장애인, 동절기(11월~3월)

모노레일 탑승료

구 분	탑승료	
	일 반	아동·청소년
보 통 권	5,000원	4,000원
할 인 권	4,000원	3,000원

※ 할인권 : 제9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12호~제14호, 단체, 만 65세 이상, 군인, 장애인, 예천군민

◇개정이유

- 가. 곤충생태원 온라인 예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온라인예매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매표업무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
- 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는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이용요금 감면수준을 반영한 이용료를 적용하고자 함
- 다. 곤충생태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제공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곤충생태원을 방문 및 홍보하는 관련자에게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지역 관광지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온라인예매시스템 운영 및 환불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조항 개정 및 대상자 추가(안 제9조)
- 다. 홍보물품 제작 및 무상 제공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공인 폐기 및 신조(개각) 공고

예천군 공인조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폐기 및 신조(재등록) 공인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기 및 신조 사유 : 마멸에 인한 폐기 및 신조
2. 폐기 및 신조 개시일 : 2022 년 8 월 1 일
3. 폐기 및 신조 공인내역 : 붙임과 같음

2022년 7 월 28일

예 천 군 수

폐기 공인 내역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폐기	예천군계인 민원실용	전서체 1.3cm×3.0cm		
폐기	예천군공유토지 분할위원회인	전서체 3.5cm×3.5cm		

신조 공인 내역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신조	민원실예천읍장 의인전용	전서체 2.1cm×2.1cm		인증기
신조	민원실예천읍장 의인전용	훈민정음체 2.1cm×2.1cm		통합 인증기
신조	예천군계인 민원실용	훈민정음체 1.3cm×3.0cm		

**「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오류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상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오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상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8월 1일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오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상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안전재난과

다.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은풍면, 지보면 일원

라. 사업규모 : 배수펌프(수중축류펌프 및 수중사류펌프) 4개소(12대), 제진기(로타리식 자동제진기) 4개소(12대), 교량 12개소, 가설교량 1개소

2. 공법 선정위원회 모집 개요

가. 모집기간 : 2022. 8.1.(월) ~ 2022. 8. 8.(월) 17:00까지(기간 외 접수 불가)

나. 모집인원 : 예비위원 21명(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다. 모집분야 : 수자원분야(2), 기계분야(2), 구조분야(2), 토질분야(1)

라. 역 할 : 본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대한 평가 심의

3.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가. 자격조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예천군 소속공무원 제외)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한 자
- 평가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연구원

나. 제외대상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8.1.(월) ~ 2022. 8. 8.(월) 17:00까지(기간 외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공문, 우편(등기), 이메일, 팩스 등 기간 내 도착분에 한 함

- 주 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 이메일 : yiku1379@korea.kr
- 팩 스 : 054-654-6159

※ 이메일로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 날인한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첨부 제출

※ 팩스 및 이메일 발송 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

라. 접수 유무 확인 : 전화 054-650-6332

마.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붙임 1)
- 보안 각서 1부 (붙임 2)
-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참여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평가위원 선정

가. 추첨일시 : 공법 및 제품 제안서 접수 시 (2022. 08.16.예정)

나. 선정인원 : 평가위원 7명 및 예비위원 2명

다. 선정방법 : 제안서 접수 시 사전에 위촉된 예비위원 21명의 고유번호 중 7개를 선택하며, 다빈도 순으로 선정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라. 선정통보 :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연락

※ 연락 불능 및 불참 시 차순위 예비평가위원 중 선정

6. 공법 선정 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2. 8. 19.(금) 14:00(예정)

나. 장 소 : 예천군청 4층 안전재난과 재난상황실(예정)

※ 일정 변경 시 별도 개별 통보 예정

7. 기타사항

가.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 시 해촉으로 봄

-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다. 공법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천군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참석 수당 지급
- 라.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된 사안은 비공개 관리될 예정이며, 후보자 등록 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마. 평가위원 업무 : 특정공법의 제안서를 심도있게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공법에 대하여 평가점수 부여
- 바.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집분야의 경력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사. 공고문 상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해석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할 경우 우리군의 해석에 따름

8. 문의처

- 예천군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054-650-6332)

-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평가위원 보안 각서 1부.
3.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동의서 1부. 끝.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문분야		
자택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장	직장명				직위(직급)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공법선정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보안각서

본인은 예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상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오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배수펌프, 제진기, 교량 및 가설교량 공법 선정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됨에 동의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오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상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 정보 등 제반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안 참가자 및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 8.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 하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지원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등록신청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 ① “전문분야”는 모집분야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② “휴대폰 번호”는 본인 확인 및 위원선정 개별 통보를 위한 연락처로 오타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선정 개별 통보 시 연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평가위원으로 대체됩니다.
- ③ “학력사항”은 대학이상의 학력을 이수·졸업·수료·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고, 학위는 학사·석사·박사로 구분 기재바랍니다. 다만, 고졸 이하의 졸업자로서 평가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출신학교를 기재합니다.
- ④ “경력사항”은 최근 3년 이내 근무처를 반드시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⑤ “작성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을 경우 평가위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⑥ 기재사실이 허위사실로 발견될 경우 등록신청사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온천장 운영비 증가요인 발생 및 시내 일반목욕업 요금체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간영역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기휴일 지정으로 시설물 개·보수 작업 계획 수립 등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근무자들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기휴장일 지정(안 제8조제4항)

-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을 정기휴일로 지정

나. 온천장 사용료 인상(안 별표)

- 개인·단체 : 1,000원 증액 조정
- 월 정기권 : 25,000원 증액 조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k03n01@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건축과장

3) 팩스 : 054-650-6589(온천관리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축과(전화 : 054-650-83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 - 군정소식 - 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온천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온천장사용료

(단위 :원)

개 인						단 체	월정기권	비 고
일 반		할 인						
대인	소인	경로	국가·참전 유공자	다자녀 가구	온천장주변 행정리주민	대인		
6,000	4,000	4,000	4,000	4,000	4,000	5,500	100,000	단체는 30인 이상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리운영)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u><신 설></u>	제8조(관리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④ 온천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u> <u>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u>

참 고

현행 별표

온천장 사용료

(단위 : 원)

개 인							단체	월 정기권	비 고
일반		할인					대인		
대인	소인	경로	국가·참전 유공자	다자녀 가구	온천·장주변 행정리주민	등록 장애인			
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4,500	75,000	단체는 30인 이상